2020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 2510, 2511 호

다. 제출일자 : 2021. 5. 27.

라. 회부일자 : 2021. 6. 1.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 제13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결산개요

가. 일반회계 및 소방안전특별회계

1) 세입결산

【일반회계】 해당없음

【소방안전특별회계】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불납결손	미수납액	수납률(%) (B/A)
소방안전 특별회계	856,889	870,212	871,955	871,837	1	117	100.0

○ 세입 예산현액은 8,702억 12백 만원이었으나 실제 8,719억 55백 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이 중 8,718억 37백 만원을 수납하고, 1백만원을 불납 결손하였으며, 1억 17백 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고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임.

2) 세출결산

【일반회계】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일반회계	821,229	12	12		-	-	821,241	821,241	-	-	-	-	-

○ 2020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8,212억 41백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12백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함.

【소방안전특별회계】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합계	1,678,117	13,335	12		732 (-732)	-	1,691,452	1,652,095	3,410	1,361	2,049	715	35,232 (2.1%)
일반회계	821,229	12	12		-	-	821,241	821,241	-	-	-	-	-
특별회계	856,888	13,323	-		1,425 (-1,425)	-	870,211	830,854	3,410	1,361	2,049	715	35,232 (2.1%)

○ 2020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8,212억 41백 만원과 소방안전특별회계 8,702억 11백 만원을 포함하여 총계예산 규모로 총 1조 6,914억 52백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97.7%인 1조 6,520억 95백 만원을 지출하고 0.2%인 34억 1천 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1%인 352억 32백 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 이용·전용·이체·변경·예비비

【일반회계】

○ **예비비**

- 예비비 사용은 일반회계 1건에 12백 만원으로

  ○ 서울소방학교 소방인재채용 및 양성 사무관리비 12백 만원

【소방안전특별회계】

○ **이용**

- 예산 이용은 없음.

○ **전용**

- 예산 전용은 3건에 14억 62백 만원으로

  ○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 14억 25백 만원

  ○ 예방업무추진기간제근로자 보수 36백 만원

○ **이체**

- 예산 이체는 없음

○ **변경**

- 예산 변경은 없음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34억 1천 만원으로 명시이월 13억 6천 만원, 사고이월 20억 5천 만원은 이월사업비 예산현액 1조 6,914억 52백 만원 대비 0.2%임.

5)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352억 32백 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1조 6,914억 52백 만원 대비 2.1%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 행 잔 액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 산 현 액	집 행 잔 액	불 용 률 (%)	비 고
2020	1,691,452	35,232	2.1%	

- **발생원인별 내역**

  ○ 지출 잔액 : 339억 43백 만원

○	낙찰차액 잔액	:	3억 63백 만원
○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	85백 만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44백 만원
○	보조금정산 잔액	:	7억 97백 만원

4. 검 토 의 견

가. 일반회계

1) 세 입 결 산 : 해당없음

2) 세 출 결 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0	821,229	-	12	-	-	-	821,241	821,241	-	-	-	-	0
2019	835,047	-	-	-	-	-	835,047	835,047	-	-	-	-	0
2018	816,072	-	-	-	-	-	816,072	816,072	-	-	-	-	0

가) 집행잔액(불용액)(결산서 p.17~18)

○ **일반회계** 세출은 전액 소방안전특별회계로의 전출금으로 회계 간 이동에 따른 명목상 집행에 해당하여 집행잔액은 없음.

나) 예비비(결산서 p.27)

○ 일반회계 예비비는 1건에 1천 2백만원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20년도 제111기 신임교육생 교육기간('20. 1.13~9.11) 중 서울시가 소방학교 기숙사를 긴급하게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20. 8.21부터 운영)'로 활용함에 따라 잔여 교육기간 동안 교육생이 외부숙박시설을 이용하게 됨에 따른 예비비 사용으로,

- 기획조정실에서 편성한 공통예비비를 재배정 받아 사용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부득이한 집행이라 사료됨.

나. 소방안전특별회계

1) 세 입 결 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불납결손	미수납액	수납률(%) (B/A)
2020	856,889	870,212	871,955	871,837	1	117	99.9
2019	861,324	865,331	865,617	865,505	0	112	99.9
2018	828,244	840,398	840,112	840,053	7	52	99.9

가) 개요

○ 세입 예산현액은 8,702억 12백 만원이었으나 실제 8,719억 55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8,718억 37백 만원을 수납하고, 1백 만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1억 17백 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고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 임.

나) 세수추계(결산서 p.35~38)

○ 소방안전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의 경우 세입예산현액 8,702억 12백만원 대비 약 17억 44백 만원이 추가 징수 결정되었으며 일부세입 중 세수추계의 차이가 3천만원 이상 혹은 50% 이상 크게 발생한 항목들은 다음 [표]와 같음.

[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과다한 항목

(단위 : 천원)

편성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차액(c) (b-a)	증감률 (c/a*100)	비고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사용료	16,637	7,243	7,234	△9,394	△56.5%	코로나19로 인한 기타사용료(광나루안전체험관 강당 대관료 등) 수입 감소, 소방학교 부설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부재로 수납액 감소
증지수입	112,083	80,294	80,294	△31,789	△28.4%	예산추계 대비 민원실 증지수입(방염처리 성능검사, 위험물인·허가 등) 감소
기타사업수입	56,251	20,082	20,082	△36,169	△64.3%	코로나19로 인해 전문교육의 외부 위탁 감소
공공예금이자수입	119,846	70,378	70,378	△49,468	△41.3%	소방안전특별회계('16년 개시) 평균 잔고의 변동폭이 커 정확한 산출 오류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	29,715	79,770	74,970	50,055	168.5%	최근 5년간('18~'14년) 징수액에서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 징수액으로 추계하였으나, 추계 대비 부과건수가 증가
불용품매각대	632,296	524,464	524,464	△107,832	△17.1%	행안부 노후경유차 감축 시행에 따른 노후경유차 폐차 매각으로 인한 매각 대금 감소 및 불용 소방차량 무상양여
그외수입	266,207	498,580	498,580	232,373	87.3%	각종 잡수입으로 예측이 곤란하여, 예산추계시 최근 5년간('18~'14년) 징수액에서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징수액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나, 과오납 및 각종 정산 환급금, 감사결과 환수금 등 증가
지난연도수입	18,291	117,964	24,040	99,673	544.9%	납부독촉 및 적극적인 압류에도 납세태만, 무재산 등 체납으로 지난연도수입 증가
보전수입 등						
국고보조금사용잔액	42,476	606,016	606,016	563,540	1,326.7%	소방청에서 화재안전특별 조사 국고보조금 과다책정, 인건비(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국내여비·공공운영비 잔액 발생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926,649	2,925,000	2,925,000	998,351	51.8%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중도상환자 증가

○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는 예산액 1,663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이 724만원으로 939만원(56.5%)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광나루안전체험관 다목적실 등 폐쇄와 소방학교 부설주차장 주차시스템 설치 전 주차요금 징수 불가기간에 따라 사용료 수입이 감소함에 기인한 것임.

- 여기서, 소방학교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소방행정타운 공사가 완료(2019년)되고 2020년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할 계획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막상 주차요금 징수에 필요한 무인주차시스템(주차차단기, 카메라 등) 설치비 예산 편성을 누락하여 주차요금 징수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른 것임.

- 해당연도에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방문객이 많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주차요금 세입손실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당연히 필요한 주차요금 징수설비의 설치를 간과한 채 징수세입만 편성했다는 것은 행정업무가 세심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할 것인바 시정되어야 할 것임.

[표] 최근 3년간 기타사용료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차액(c) (b-a)	증감률 (c/a*100)	비고
2020	16,637	7,243	7,234	**△9,394**	**60.2%**	코로나19로 인한 기타사용료(광나루안전체험관 강당 대관료 등) 수입 감소
2019	16,182	5,213	5,213	**△10,969**	**△67.8%**	남산 예장자락 재생공사가 연장되어 '19.7월부터 본부 주차장 운영으로 주차 요금 징수액 감소 등
2018	17,945	7,151	7,151	**△10,794**	**△60.2%**	남산 예장자락 재생공사 관련 본부 주차장 폐쇄로 주차요금 징수액 감소 등

○ **기타사업수입**은 예산액 5천 6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2천만원으로 3천 6백만원(64.3%)이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방안전실무교육과 지휘역량강화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수탁교육이 감소함에 따른 것임.

[표] 최근 3년간('20 ~ '18) 기타사업수입 세입 현황

(단위 : 명, 천원)

연 도	2020년		2019년		2018년	
	교육인원	금 액	교육인원	금 액	교육인원	금 액
인원 및 금액	174	20,082,420	888	37,859,980	1,103	257,663,350

○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결산금액으로 예산액 1억 2천만원 대비 5천만원(41.3%)이 감소한 7천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감소한 것은 최근 3년 평균잔고와 이자율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나 실제 평균잔고가 감소함에 따른 것임.

- 이는 다음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세출 모(母)계좌[1]에서 발생하는 평균잔고 및 이자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에 따른 것으로 정확한 세수추계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2016년 소방안전특별회계가 출발한지 5년이 경과했다는 점에서 경향 파악 등을 통해 보다 근사한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1) 모(母)계좌: 공금계좌는 '모(母)계좌-자(子)계좌-손자(孫子)계좌'로 나누어져 있고, 계좌번호는 ①11000-②회계번호-③기관번호-④회계연도의 끝숫자 로 구성되어져있다. 이 때 ③기관번호가 '000'이면 모계좌라 한다. 예를 들면, 2020년 소방재난본부(기관번호: 150) 소방안전특별회계(회계번호: 43)의 세출 자(子)계좌는 '11000-43-0000150-20'이다.

[표] 2018~2020년도 세출 모계좌 이자 세부내역

(단위 : 천원)

회계연도 / 이자산정대상일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이자발생 회계연도	평균잔고	이자금액	이자발생 회계연도	평균잔고	이자금액	이자발생 회계연도	평균잔고	이자금액
전년도. 07.01~12.31.	2017	2,821,361	52,195	2018	5,933,271	109,766	2019	1,583,236	29,290
당해연도. 01.01~02.28.	2017	675,896	12,504	2018	989,126	16,914	2019	1,972,159	33,778
당해연도. 03.01~06.30.	2017	9,229	171	2018	20,191	373			
당해연도. 01.01~6.30.	2018	1,322,616	24,468	2019	367,365	5,584	2020	480,917	7,310
	합 계		89,338	합 계		132,637	합 계		70,378

○ **과징금**의 경우, 예산액 2천 9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8천만원으로 5천 1백만원(168.5%)이 증가하였음.

- 이는 세입예산 추계 시 최근 5년간을 기준으로 최고·최저 금액을 제외한 평균 징수액으로 편성하였으나, 2020년 소방청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된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실태조사'에서 '하도급 제한 위반 업체'에 대한 적발 건수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표] 최근 5년간('20 ~ '16) 과징금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별	평균	2020	2019	2018	2017	2016
과징금 예산액	23,579	29,175	27,642	36,252	24,000	30,000
징수결정액	34,723	79,970	42,965	43,116	15,030	45,405
부과건수	12.8건	17건	10건	23건	8건	6건

- 적발 건수의 증가는 시민의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가 떨어질 경우 효율적인 예산사용을 저해하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다음으로, **그외수입**은 일반 세입과목에 속하지 않는 기타잡수입으로 예산액 2억 66백만원 대비 2억원 32백만원(87.3%) 증가한 4억 99백만원이 징수결정 되었음.

[표] 최근 5년간 그외수입 수납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별	2020	2019	2018	2017	2016
예산액(a)	266,207	377,215	193,433	122,081	168,656
징수결정액(b)	498,580	276,654	412,247	336,733	285,066
차액(c=b-a)	232,373	△100,561	218,814	214,652	116,410
증감률(c/a*100)	87.3%	△26.7%	113.1%	175.8%	69.0%

- 주요 증가 사유는 2018년도에 조달구매방식으로 특수방화복 구매를 하였으나, 계약업체가 특수방화복 납품 전에 거쳐야 하는 성능시험에서 계속하여 불합격함에 따라 계약기간 내 납품이 지연되어 조달물자 환불대금(특수방화복 조달구매 발주취소 선금 및 이자) 2억 66백만원('20. 3. 27.)[2]을 세입 조치함에 따른 것임.

2) 2억 66백만원 중 계약해지 위약금 3천3백만원은 별도 '위약금 및 지연배상금' 과목으로 세입 처리함.

- 특수방화복은 화재현장에서 화염으로부터 소방대원의 신체를 보호해주는 마지막 보호장비로 반드시 성능기준을 충족하고 적기에 납품되어야 함에도 제작업체의 제품에 대한 성능기준 불만족으로 인해 납품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달구매 과정에서 제품의 최종 선정에 앞 서 성능기준 만족 여부를 면밀히 현장 검증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임.

[표] 특수방화복 구매 계약 해지 건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내 용
계약명	소방용 특수방화복(1,000벌) 구매
계약방법	조달구매 (최저가구매)
계약기간	2018. 5. 31. ~ 2018. 10. 2. [총 124일]
계약해지	2019. 10. 18. / 지연일수 : 381일
계약금액	363,580,660원 - 위약금 : 32,844,200원 - 발주취소에 따른 선금 및 이자 : 266,055,900원
납품지연사유	특수방화복 제작원단 성능 시험 불합격으로 인한 지연
계약해지사유	특수방화복 제작원단 수급 불안정 등으로 납품이행 불투명
업체명	㈜진양에스앤피
경 과	- ('18. 6. 4.) 특수방화복 조달구매 발주(1,000벌) - ('18. 10. 2.) 납기일 도래, 업체 사정*으로 납품 지연 *특수방화복 제작 원단성능 시험 불합격으로 지연(성능시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18년 10월~19년 9월) 납품 이행 독촉 방문, 업체 납품이행각서 제출 - ('19. 10. 18.) 업체 납품포기로 인한 계약해지 - ('20. 3. 27.) 조달구매 발주취소 선금 및 이자 2억 6천 6백만원 세입 - ('20. 3. 31.) 업체 위약금 3천 3백만원 배상, 업체 2년 입찰참가 제한

○ 다음으로, **지난연도수입**은 전년도 누적된 체납액이 이월된 수입으로 예산액 1천 8백만원 대비 1억원(544.9%)이 증가한 1억 1천 8백만원이 징수결정 되었음.

- 최근 4년간 체납액에 대한 이월사유별 미수납내역을 살펴보면, 납세태만이 45.0%(37건, 4천 2백만원)로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으며, 무재산 27.0%(9건, 2천 5백만원), 행방불명 9.7%(5건, 9백만원), 폐업 또는 부도 8.6%(5건, 8백만원), 소송계류 5.9(2건, 6백만원), 기타 3.8%(2건, 4백만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참조)

[표] 지난연도수입 부과년도별 미수납내역

(단위 : 천원)

미수납사유	합계		부과년도							
			2019년		2018년		2017년		2017년 이전	
합 계	60건	93,924	23건	44,192	11건	13,829	8건	6,307	18건	29,596
무재산	9건	25,376	3	17,867	1	701	1	400	4	6,408
행방불명	5건	9,146	1	629	2	4,170			2	4,347
납세태만	37건	42,247	18	24,946	8	8,958	6	5,516	5	2,828
폐업 또는 부도	5건	8,062					1	391	4	7,671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0건	0								
결기 또는 압원	0건	0								
소송계류	2건	5,510							2	5,510
국외이주	0건	0								
자금압박	0건	0								
기타	2건	3,582	1	750					1	2,832

- 이처럼 고질적 체납이 누적되어 누계체납액을 증가시켜 결국에는 불납결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수납율 제고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 특별히 납세태만의 경우에는 강력한 징수 의지를 가지고 별도의 징수팀을 운영하거나 서울시의 '38세금징수과'와의 업무협조 등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징수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보전수입 중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은 예산액 4천 2백만원 대비 5억 6천 4백만원(1326.7%) 증가한 6억 6백만원이 징수결정 되었는데,

- 이는 소방보조인력(사회복무요원), 화재안전특별조사 인력 등과 관련해 소방청에서 당초 서울시가 요청한 인력보다 많은 인력의 예산을 배정함에 따른 것으로,

- 사전에 소방청과 적정소요 인력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되는 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보다 세심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짐.

다) 결손처분(결산서 p.35~38 p.117)

○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손처분은 1건(110만원)으로, 이는 2017년에 방염처리 되지 않은 실내장식물을 설치한 영업주에게 과태

료를 부과하였으나 재판 진행 중 당사자가 영업장을 폐업하고 행방불명되었으며,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인해 공시송달(2020년) 후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결손처분한 것임.

- 체납관리 중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부족할 때,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체납자의 행방불명 또는 무재산으로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 건이 결손처분 사유에는 해당되나,

- 결손처분 후에도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지속적으로 체납자를 조회하여 추적하고 발견 시 재산조회를 통해 결손처분 취소와 재산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라) 미수납액(결산서 p.35~38, p.121)

○ 미수납액은 1억 17백만원으로 전액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표] 소방안전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천원)

사유 \ 과목	계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과징금	과태료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	117,089	321	4,800	18,045	93,924
	100%	0.3%	4.1%	15.4%	80.2%
무재산	29,826			4,450	25,376
행방불명	9,146				9,146
납세태만	54,092			11,845	42,247

	폐업 또는 부도	8,062				8,062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격리 또는 입원					
	소송계류	5,510				5,510
	국외이주					
	자금압박					
	기타	10,453	321	4,800*	1,750	3,582

* '20년 연도말에 부과하여 '21년 2월 수납완료한 건으로 체납은 아님

○ 상기 [표]의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에 포함된 세입과목 중 지난연도수입(80.2%)과 과태료(15.4%)가 주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미수납 사유별로 보면 납세태만(46.2%), 무재산(25.5%)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납세태만 체납자의 경우 고의체납의 경우가 많으므로 적극적인 수납 독려와 체납관리를 통해 이월액을 줄여야 할 것임.

마) 환급액(결산서 p.35~38, p.125)

○ 환급액은 172만 9천원으로 최근 3년간 환급액 현황을 살펴보면 환급액 건수 및 금액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긍정적이라 사료되나,

- 다음 [표]에서 보여주듯이 환급액 발생 세부사유가 대부분 행정기관의 착오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업무관련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방지해야할 것임.

[표] 최근 3년간('20~'18) 세입결산 중 환급액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환급액**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권리구제	기타
2020	871,955,138	871,836,947	**1,729**	23		1,706
			4건	2건		2건
2019	865,617,303	865,505,360	**174**	174		
			2건	2건		
2018	840,112,092	840,052,774	**8,468**	438	4,824	3,206
			7건	4건	1건	2건

2) 세 출 결 산

세 출 결 산 현 황 (순계규모)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0	856,888	13,323	-	-	1,462 (-1,462)	-	870,211	830,853	3,410	1,360	2,050	715	35,232 (4.0%)
2019	861,324	4,007	-	13 (-13)	732 (-732)	-	865,331	822,953	13,323	881	12,442	606	28,449 (3.3%)
2018	828,244	12,154	-	62 (-62)	2,415 (-2,415)	-	840,398	823,395	4,007	-	4,007	5	12,991 (1.5%)

가) 개 요

○ 2020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8,212억 41백만원과 소방안전특별회계 8,702억 11백만원(순계예산[3])을 포함하여 총 1조 6,914억 53백만원(총계예산[4])으로 이 중 지출액은 총계규모로 1조 6,520억 95백만원이고 순계규모로 8,308억 53백만원임.

- 순계규모 기준 다음연도 이월액은 0.3%인 34억 1천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0%인 352억 32백만원에 해당함.

나) 집행잔액(불용액)(결산서 p.43~55)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인 352억 32백만원이며, 불용률

3) **순계예산**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예산에서 회계간 전출입 등을 통한 재원의 중복계상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적 재정규모를 말함.

4) **총계예산** :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 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서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총계한 규모를 말함.

30% 이상 또는 집행잔액 1억원 이상 사업은 '소방행정타운 건립' 등 22건임. ([표] 참고)

[표] 불용률 30% 이상 또는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과)	사 업 명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	**소방행정과**	**소방행정타운 건립**	**17,123**	**16,167**		**0**	**956**	**5.6%**
2	소방행정과	119안전센터 재건축 등	3,526	3,291	109	0	126	3.6%
3	소방행정과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보수	12,133	11,987		0	146	1.2%
4	소방행정과	소방활동지원	20,966	20,459			507	2.4%
5	**소방행정과**	**구의유수지 119안전센터 설치 타당성 조사**	**70**	**19**	**26**	**0**	**25**	**35.7%**
6	**소방행정과**	**전문기관 위탁교육 훈련**	**899**	**688**	**0**	**0**	**211**	**23.5%**
7	소방행정과	소방직무능력 제고	1,373	1,137	0	0	236	17.2%
8	**소방행정과**	**기본경비**	**22,054**	**19,031**			**3,023**	**13.7%**
9	**소방행정과**	**인력운영비**	**645,860**	**619,582**			**26,278**	**4.1%**
10	재난대응과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등	2,675	2,519	0	0	156	5.8%
11	재난대응과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7,913	7,609	0	0	304	3.8%
12	예방과	화재예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10,378	8,114	968	640	656	6.3%
13	안전지원과	후생복지 지원	8,901	8,758	0	0	143	1.6%
14	안전지원과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15,117	14,978			139	0.9%
15	안전지원과	소방공무원 정신 건강 (PTSD 등)관리	1,122	996	0	2	124	10.9%
16	안전지원과	전산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	3,392	3,253	0	0	139	4.1%
17	**소방감사담당관**	**소방청렴도 향상 및 투명성 제고**	**132**	**92**	**0**	**0**	**40**	**30.3%**
18	서울종합방재센터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2,618	2,462	0	3	153	5.8%
19	**서울종합방재센터**	**기본경비**	**1,372**	**1,000**	**0**	**0**	**372**	**27.1%**
20	소방학교	소방인재채용 및 양성	2,930	2,526	23		381	13.0%
21	**소방학교**	**기본경비**	**1,148**	**900**			**248**	**21.6%**
22	119특수구조단	기본경비	1,131	1,023	0	0	108	9.5%

○ 이 중 ‘**소방행정타운 건립**’사업은 예산현액 171억 23백만 원 대비 9억 56백만원(5.6%)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 동 사업은 실화재 훈련시설 설치와 관련해 2019년 예산현액 287억 55백만원 중 6.6%인 시설비 19억 1백만원을 사고이월한 바 있으며, 이 중 격실화재 훈련시설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계약업체의 납품지연으로 9억 56백만원을 또다시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함.

- 2019회계연도 당시 사고이월은 본 사업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특수재난 전문교육훈련시설[5]을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발주하였으나,

- 공사에 임박하여 기술적인 문제로 시공업체가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시공이 가능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시장조사 및 입찰을 진행[6]하는 등 사전절차 지연에 따라 발생한 것이며,

---

5) 실화재훈련장, 차량사고 훈련장, 화생방테러훈련장 등

6) □ **실화재 입찰 및 계약 추진 현황**
○ **발주 기본 방침 : ’19.07.11**
- 소방행정타운 2단계 전문훈련시설 실화재 훈련장 등 전문훈련시설 설치 계획(소방행정과-18247)
○ 입찰 공고 의뢰 : ’19.08.01(서울시 재무과)
○ 입찰 1차 공고일 : ’19.08.07~8.27(결과 유찰/참여업체 1개사)
○ 입찰 2차 공고일 : ’19.8.30~9.17(결과 유찰/ 참여업체 1개사)
○ **계약 일시 : ’19.12.20(2회 유찰로 수의 계약 추진)**
- 계약 업체명 : 이알에스아시아(주)(경기도 고양시 소재)
○ 계약금액 : 1,901,000천원 (2020. 2.18. 선급금 950,500천원 지급)
○ 계약일자 : 2019.12.20. * 2019회계연도 사고이월 사업임
○ 최초 계약기간 : 2019. 12. 20. ~ 2020. 4. 17.
- 1차 연장 : 2020. 4. 18. ~ 2020. 8. 15.
- 2차 연장 : 2020. 8. 16. ~ 2020. 11. 30.
○ **일부 납품: ’20.12월 차량화재훈련시설, 위험물화재훈련시설, 화재시뮬레이터 3종은 납품·설치를 완료**

- 당해연도 불용사유는 계약업체인 '이알에스아시아'에서 실화재 훈련시설 중 일부를 네덜란드 업체인 '라이언사' 에 제작납품 의뢰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현지 공장의 가동이 중지됨에 따라 계약기간 내 납품이 불가해졌고,

- 「행정안전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7]에 근거하여 사고이월에 대한 재사고이월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된 것임.

- 코로나19로 인해 관련된 여러 상황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점은 이해되나 동 사업의 경우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발주 과정에서 국내 기술수준 및 입찰 참가업체의 전문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행정미숙이 이와 같은 연례적인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을 낳았다고 판단됨.

-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현재까지 설치된 실화재 훈련시설 이외에 격실화재 훈련장 등에 대해 대폭적인 보완 및 재검토를 거쳐 당초 9억 56백만원 규모에서 100억원 규모[8]로 대폭 증액

---

7) □ **행정안전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이월예산의 집행상 주의사항〉
○ 재이월문제
- **명시이월된 사업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다시 사고이월 할 수 있지만 사고이월 사업의 재사고이월은 불가**

8) □ **격실화재 훈련장 확대 설치 논의 배경**
○ 서울소방의 위상에 맞는 **아시아 최대규모, 최고수준의 시설** 필요
- 국내 및 해외 소방기관에서 벤치마킹 및 교육·훈련 연수 등 유치
○ **도심형 훈련시설의 특징**〔환경, 소음, 민원 등〕을 반영한 입지 및 시설 채택
- 소음/진동방지, 집진시설, 폐오수 정화 등 친환경 시설 및 관리시스템 구축
○ **기 추진 실물화재 훈련장 미비점 보완**
- 훈련장 1개동으로 화재성상 등 **다양한 훈련프로그램 운영의 한계**

하여 돔 형태의 종합 격실화재 훈련장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이 내부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격실화재 훈련장이 초고층 빌딩, 지하연계복합시설물 등이 많은 서울의 도시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화재현상을 숙지하고 적절한 진압전술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적극 공감하나,

- 시설규모가 당초 계획대비 큰 폭으로 변동됨에 따라 동 시설 설치의 타당성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실화재 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짙은 농연 등에 대한 처리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음으로, '**전문기관 위탁교육 훈련**' 사업은, 예산현액 8억 99백만원 중 2억 11백만원(23.5%)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 이는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계획했던 외부기관의 집합교육이 취소 및 축소 운영되었고, 구조대원의 해외훈련 등이 전면 취소됨에 따른 것임.

- 다만, 교육 및 훈련은 업무 능력의 향상 및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만큼 기존의 대면형태의 교육·훈련 방식 이외에도 다양한

- 훈련운영을 위한 부대시설(목재 창고, 장비 보관실, 샤워 및 탈의실 등)에 대한 예산 미반영
※ 소방공무원 보건환경 측면에서 실물화재훈련장은 기존 시설과 분리 운영 필요

방법을 강구하여 교육 및 훈련의 연속성을 담보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소방행정과,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기본경비**'는 각각 예산현액 220억 54백만원 중 30억 23백만원(13.7%), 13억72백만원 중 3억 72백만원(27.1%), 11억 48백만원 2억 48백만원(21.6%)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표] 소방행정과,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과)	사 업 명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소방행정과	기 본 경 비	22,054	19,031			3,023	13.7%
서울종합방재센터	기 본 경 비	1,372	1,000	0	0	372	27.1%
소방학교	기 본 경 비	1,148	900			248	21.6%

-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직원들의 교육 및 출장자제 등 외부활동 자제로 인한 여비 및 급량비 등 지출감소와 소방학교의 교육 취소로 인한 시설 유지비용(공공운영비)등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른 것임.

- 코로나 시국에 감염확산방지를 위한 직원들의 외부활동 자제 및 관련시설의 운영 자제는 적절한 조치라 사료되나, 소방 전체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신임자 교육 등에 대해서는 교육 및 훈련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6,458억 6천만원 중 262억 78백만원(4.1%)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 주요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신규임용자 감소(319명→170명)로 약 35억원 미집행, 외근직원의 훈련·행사 등의 외부활동 취소 및 감소로 약 30억원 미집행, 그리고 보수 순 집행잔액 약 120억원 등이 발생함에 따른 것임([표]참조).

- 소방본부는 아래 [표]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집행잔액(9억 89백만원) 발생에 대해 공무직 평균호봉이 7호봉에 해당하나 市-편성지침상 18호봉에 맞추어 편성하다보니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설명이나,

[표] 2020년 인력운영비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연번	사업명	통계목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사 유
총 계			**645,860**	**619,583**	**95.9**	**26,277**	**4.1**	
1	인력운영비	보수	492,692	471,435	95.7	21,257	4.3	훈련 등 외부활동 취소 및 감소로 인한 초과근무 감소
2		기타직보수	6,643	4,310	64.9	2,333	35.1	신규교육 중단 및 단축으로 잔액발생
3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9,540	8,550	89.6	989	10.4	실제 소방본부 공무직 평균호봉은 7호봉이나 지침상 18호봉으로 편성되어 잔액발생
4		직급보조비	14,406	13,623	94.6	783	5.4	집행잔액
5		성과상여금	23,437	23,296	99.4	142	0.6	집행잔액
6		연금부담금	80,208	80,208	100	0	0.	
7		국민건강보험금	18,934	18,161	95.9	773	4.1	집행잔액

- 앞으로도 지침에만 맞추어 예산을 편성할 경우 공무직 평균호봉이 18호봉에 도달할 때까지는 집행잔액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바, 지침의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는 최적의 인력비가 편성되도록 해야 할 것임.

다) 예산이용(결산서 p.59)

○ 예산의 이용은 없음.

라) 예산전용(결산서 p.60)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9]에 의해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인건비 보수 부족분 확보를 위해 예산전용([표] 참고) 3건에 14억 62백만원을 충당하여 사용하였음.

[표] 2020회계연도 예산전용 내역

(단위: 천원)

연번	과목			전용금액		전용승인일자	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합 계				1,462,850	1,462,850		
1	소방행정과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1,425,850		'20.10.30.	4분기 연금부담금 초과 고지로 인한 전용
	소방행정과	인력운영비	304-01 연금부담금		1,425,850		
2	예방과	예방업무향상	201-02 공공운영비	24,000		'20.07.29.	화재특별조사 4대 보험 정산금 확보
	예방과	예방업무향상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4,000		
3	예방과	예방업무향상	207-02 전산개발비	13,000		'20.07.29.	화재특별조사 4대 보험 정산금 확보
	예방과	예방업무향상	101-01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3,000		

9)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 예산 전용의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인력운영비’의 경우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연금부담금이 부족(4/4납부액)하여 편성예산 대비 14억 26백만원을 보수예산에서 충당한 것이며,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의 경우는 화재특별조사 사업이 ‘19년도에 종료되었으나 ‘20년에 잔여 보험금 3천7백만원을 납부하고자 전용한 것임.

- 참고로, 아래 [표]의 소방안전특별회계 시행 이후 인력운영비와 관련된 예산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예산의 변경 또는 전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 예측치 못했던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변동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인력운영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조사와 예측을 통해 예산추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소방안전특별회계 시행(2016~2020)이후 인력운영비 예산 변경·전용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현황	세부사업	통계목	금액	사유
2020	전용	인력운영비	보수 → 연금부담금	1,425,850	- 2020회계연도 편성예산 대비 연금부담금의 초과고지로 인해 연금부담금 납부액 부족 확보
	전용	예방업무 추진향상	공공운영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000	- ‘19년도 근무했던 화재안전 특별조사 기간제근로자의 4대 보험료가 ‘20회계연도에 정산금 이 청구되어 편성 예산의 부족으로 확보
	전용	예방업무 추진향상	전산개발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000	- 2020회계연도 편성예산 대비 연금부담

2019	전용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 →직급보조비	732,470	-지방공무원 수당개정(`19.1.8) 으로 인한 직급보조비 단가인상으로 부족분 확보
2018	전용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 →보수	2,400,00	-교대제 근무자 공동근무시간(20분/일) 인정으로 월5시간 초과근무 추가 발생부족분 확보
2017	전용	인력운영비	성과상여금 →직급보조비	280,390	-정원증가(101명) └→현장부족인력 45명, 성동소방서 개서 56명 -119안전센터장 직급상향(89명)
	전용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공공운영비 →직급보조비	13,291	
	전용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 →보수	1,204,539	
	변경	소방활동지원	사무관리비 →특정업무경비	106,000	
	변경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보수	950,000	
	변경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보수	2,390,000	
	변경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100,000	
2016	전용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공공운영비 →보수	500,000	-현업근무자 시간외근무 개정으로 휴게시간 등 미공제하여 추가발생되는 시간 미편성 -지방공무원수당규정개정(`16.1.1) 에따른 출동가산금 범위확대(기존 화재출동 4건 이상부터 지급→1일1회 이상시 지급) 및 위험근무수당 종별세분화 및 지급단가 인상(갑종5만→6만)
	전용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 →보수	2,733,128	
	전용	인력운영비	직급보조비 →보수	440,350	
	변경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 →보수	243,492	
	변경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보수	2,720,422	
	변경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 →성과상여금	65,853	-성과상여금 별도정원 미반영 (62명부족 편성)

마) 예산이체(결산서 p.61)

○ 예산의 이체는 없음.

바) 예산변경(결산서 p.62)

○ 예산의 변경은 없음.

사) 예비비(결산서 p.65)

○ 예비비 사용은 없음.

아) 차년도 사고이월[10](결산서 p.151~152)

○ 2020회계연도 사고이월은 '소방합동청사 건립 사업' 등 6개 사업, 7건으로 사고이월 대상사업 예산현액 141억 8백만원 대비 14.5%인 20억 5천만원([표] 참고)을 사고이월 하였음.

[표] 2020년도 서울소방재난본부 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관리 부서 (과)	사 업 명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집행잔액	이월률 (%)	이월사유
합 계		14,108	2,050	358	14.5	
소방행정과	① 소방합동청사 건립 사업 (시설비)	110	44	0	40.0	임시청사이전부지 '21년 1월 임차료 사용을 위하여 사고이월
	② 금천소방서 신설 (시설비)	5,629	1,307	0	23.2	금천소방서 공사 진행중 장마 및 현장여건으로 공사기간이 2개월 지연됨에 따라 이월
	③ 금천소방서 신설 (감리비)	1,073	255	0	23.8	
	④ 구의유수지 119안전센터 설치 타당성 조사 (시설비)	70	26	25	37.1	타당성 조사 과업지시서상 수행과제 총 13건의 보완이 필요로 금년내 납품이 불가 하여 이월
	⑤ 119안전센터 재건축 등 (시설비)	3,396	109	118	3.2	가락119안전센터 설계 용역이 '21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사고이월이 불가피 하여 이월
재난대응과	⑥ 구급장비 보강및 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2,055	286	1	13.9	구급대원 개인안전 보호조끼(방검조끼)구매건에 대하여 계약업체의 공장 제작 지연으로 금년 내 납품이 불가하여 이월
소방학교 교육지원과	⑦ 소방인재채용 및 양성 (사무관리비)	1,775	23	214	1.3	제112기 신임교육생 교육기간 중 학교기숙사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변경 운영됨에 따라 교육생의 기숙사 운영비에 '21.1월분에 대한 외부 숙박비를 이월

○ **'소방합동청사 건립'** 사업의 경우 종로구청과 종로소방서를 통합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795억원

10) 사고이월이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규정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사항으로서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을 말함.

을 투입하여 소방재난본부, 종합방재센터, 종로소방서가 입주하는 통합청사를 건립하는 장기계속사업에 해당하며,

- 당해연도에 예산현액 1억 1천만원 중 40%인 시설비 4천 4백만원을 사고이월함.

[표] 소방합동청사 건립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24
❍ 사업규모 : 지상 12층, 지하 4층, 연면적 17,789㎡, 부지면적 1,987㎡
❍ 사 업 비 : 795억원 (건축 530억원, 상황실 등 전산시스템 265억원)
❍ 입주부서 : 소방재난본부, 종합방재센터, 종로소방서

※ 종로구 통합개발 규모

- 대지위치 : 종로구 삼봉로43 (현 종로구청사, 종로소방서 부지)
- 사업규모 : 지상17층, 지하5층 / 연면적 66,907㎡ / 부지면적 8,622㎡
- 입주기관 : 종로구청·구의회·보건소
  소방재난본부·종합방재센터·종로소방서
- 건축물용도 : 공공청사, 문화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 전체사업비 : 2,599억원 (건축공사비 1,681억원)

- 사고이월 사유는 2020년도 제4차 추경에서 종로소방서 이전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료로 1억 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임시청사는 추후 매몰되는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료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었고,

- 소방재난본부가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임대료를 조정(월 임차료 110백만 원→66백만원)을 이끌어 냄에 따라 임차비 잉여분 4천4백만원을 차년도 임차료('21.1월분)로 지급하고자 사고이월 함에 따른 것임.

- 이는 소방재난본부의 적극적인 협상 노력에 따른 예산절감의 좋은 사례라 할 것이나 한편으론, 예산편성 시점에서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졌다면 사고이월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일부 아쉬움이 남음.

○ **'금천소방서 신설'**사업은 예산현액 67억 2백만원 중 시설비 23.2%인 13억 7백만원, 감리비 23.8%인 2억 55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는데,

- 그 사유는 '19.11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토목 및 골조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지 주변 지장물 철거를 위한 구청 및 한전 등과의 협의 지연, 5~6월까지의 장마철, 공사장 주변 주택가의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지연(62일간)됨에 따른 것임.

- 아래 [표]를 살펴보면, '금천소방서 신설' 사업이 매년 다양한 사유로 인해 사고이월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바, 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재발방지는 물론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사용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표] 금천소방서 신설 사업 최근 4년간 이월액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이월구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률 (%)	이월사유
합 계		46,060	7,059	1,688	**15.3**	
2020년도	사고이월	6,702	1,562	0	**23.3**	금천소방서 공사 진행 중 장마 및 현장여건으로 공사 기간이 2개월 지연됨에 따라 이월

연도별	이월구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률 (%)	이월사유
2019년도	사고이월	6,081	4,359	165	71.7	공사규모 확대와 기준가격이 기존대비 33.5% 증가하여 공유재산재심의 및 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계약 및 착공이 11월로 지연되어 시설비 및 감리비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이월함
2018년도	사고이월	28,791	801	1,516	2.8	소방서 건립 인근 주민의 반대로 토지보상 절차가 늦어져 '18년도 철거가 예정대로 진행이 안되어 '18.12월 철거 공사계약 으로 철거공사비에 대하여 이월 함
2017년도	사고이월	4,486	337	7	7.5	금천소방서 건립공사 설계용역이 '17.6.21. 계약되어 선금 220백만원을 집행 하였고 '18 .4.21. 용역 준공으로 용역비 잔금 337백만원을 이월함

○ **'구의유수지 119안전센터 설치 타당성 조사'** 사업의 경우는 예산현액 7천만원 중 37.1%인 26백만원을 사고이월함.

- 사고이월 사유는 용역사에서 최종 용역결과 보고서를 기한 내('20.7.20~11.22)에 제출하였으나 과업지시서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전문재활치료시설 기본구상', '주민편의시설 설치 제안' 등 총 13건의 사항이 누락됨에 따라 용역보고서의 보완이 필요하여 당해연도 내 납품이 불가해짐에 따른 것임.

- 용역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보완지시를 내린 것은 타당한 조치라 사료되나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중간보고 및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여겨지는바, 소방재난본부가 시행하는 각종 용역에 대한 중간점검이 보다 내실 있게 시행되도록 자체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임.

○ **‘119안전센터 재건축 등’** 사업은 노후 된 119안전센터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3억 96백만원 중 3.2%인 1억 9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사고이월 사유는 송파구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11]에 따라 ‘가락119안전센터’와 ‘강남농수산물검사소’를 합동청사로 재건축함에 있어 설계용역을 ‘20.12.23일 뒤늦게 체결함에 따라 준공기한(’21.11.22)이 차년도로 미루어짐에 따른 것임.

- 이는 당초 계획 대비 각종 사전절차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며,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점에서 관련 사전절차의 이행 가능성을 보다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토록 해야 할 것임.

○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사업은 예산현액 20억 55백만원 중 13.9%인 2억 86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는데,

- 그 사유는 구급대원 개인안전 보호조끼(방검조끼 486점)를 구매하기 위해 2020.9.15일 공급업체와 계약(납품기한: 20.11.14.)을 체결하였으나 공급업체가 공장 제작의 문제를 토로하면서 계속적으로 납품을 지연시킴에 따른 것임.

---

11)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 사업기간 : 2009년 ~ 2025년
- 사 업 비 : 7,485억원(국비 30%, 시비 30%, 농안기금 융자 40%)
- 사업규모 : 6개동, 연면적 513,159㎡, 부지면적 531,830㎡

- 본 구매건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기간은 2개월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납품기한 종료 후 현재까지도('21.6.1일)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바,

- 계약해지 및 지체상금 부과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여겨지며, 방검조끼가 제 때 지급되지 못할 경우 현장에서 취객 등을 상대할 때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납품기한 초과 시점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방검조끼 지급지연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했었다고 여겨짐.

○ 다음으로, '**소방인재채용 및 양성**' 예산현액 17억 75백만원 중 1.3%인 23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는데,

- 그 사유는 앞서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내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112기 신임교육생 교육기간('20.10.26.~'21.01.15) 중 서울시가 소방학교 기숙사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겠다는 요청을 해옴에 따라 교육생이 외부숙박시설을 이용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숙박비(1월분) 후불정산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 밝히고 있음.

- 다만, 동일한 사유로 인해 교육생이 불가피하게 외부숙박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111기는 예비비를 재배정받아 사용하고 제112기는 소방예산을 사용한 점을 비추어 볼

때 미숙한 행정처리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자) 기타

○ 한편,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과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의 세출예산 편성내역과 집행내역(**[붙임 1 참조]**)을 살펴보면,

○ 2019 회계연도 결산 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당초 예산안 편성 당시 의회에 제출한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비목 내 세세목별 산출근거와 실제 집행내역을 비교할 때 수량·금액 등이 상당수 변경 집행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비목 내 세세목의 경우 최종예산서 상에는 부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등의 범주 외에서 실제 여건에 따라 일부 소소한 변동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표]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사용·이체 구분

(단위: 백만원)

구 분	이 용	전 용	변경사용	이 체
적용범위	정책사업간	단위사업간	세부사업간	실·과·사업소간
요구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사업담당자	부서(기관)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실·국장, 사업소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 이를 당초 예산안 사업설명서 상에 기재된 내역대로 집행할 것을 강제하기는 어려우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회의 예산 심사 당시 제시한 세세목 내역들을 가급적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임.

○ [붙임 1]의 2020 집행 세부내역 비교에서와 같이 당초 의회에 제시한 세세목 내역이 실제 집행과정에서 변동되는 정도가 심할 경우 의회 예산심사가 무력화될 소지가 있으며,

○ 이처럼 변동되는 원인으로 당초 계획의 부정확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세세목에 대한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함으로써 집행과정에서 세세목이 크게 변동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임.

[붙임 1]

2020년도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와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 관련

연번	사업명	2020년도 예산 편성 내역	2020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집행 내역 **(실제구매한내역)**
1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 **일반구조장비 보강(20종 208점)** **= 140,320천원**	○ **일반구조대 구조장비 17종 1,099점 = 355,984천원**
		- 구조용사다리 등 7종 88점 70,600,000원 = 70,600천원	- 구조용사다리 등 8종 155점 = 60,261천원 / 집행잔액 구매 ※구조대 장비구매 시연회 및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수난구조 필수 수요장비로 변경 구매
		- 로프발사총 등 4종 5점 26,650,000원 = 26,650천원	- 동물포획장비세트 등 4종 45점 = 63,905천원 / 집행잔액 없음 ※총포법 개정에 따른 마취총 미구매 및 구조대 수요에 따라 차년도로 이월 구매 추진 결정
		- 개인장비가방 등 9종 115점 43,070,000원 = 43,070천원	- 개인장비가방 등 라이트라인 등 5종 899점 = 231,818천원 / 집행잔액 없음
		○ **대테러 및 화생방 장비 보강(21종 267점)** = 374,050천원	○ **대테러 및 화생방 장비 5종 30점 = 90,589천원**
		- 간이인체제독텐트 등 6종 13점 74,200,000원 = 74,200천원	- 간이인체제독텐트 등 4종 23점 = 75,189천원 / 집행잔액 구매 ※구조대 장비구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수난구조 필수 수요장비로 변경 구매
		- 누출물진공수거기 등 4종 44점 226,200,000원 = 226,200천원	- 화학물질보호복 1종 7점 = 15,400천원 / 집행잔액 구매 ※구조대 장비구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수난구조 필수 수요장비로 변경 구매
		- 화학보호복 검사장비 등 11종 210점 73,650,000원 = 73,650천원	※구조대 장비구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수난구조 필수 수요장비로 변경 구매
		○ **수난구조장비 보강(13종 75점)** **= 175,300천원**	○ **수난구조 장비 16종 647점 = 458,112천원** / 집행잔액 없음 ※구조대 장비구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일반구조, 화생방 대테러 장비 → 수난구조 장비로 변경 구매(최근 한강 주변, 태풍, 호우 및 신월 배수지사고 등 수난사고 증가 영향)
		- 다이브컴퓨터 등 7종 50점 89,500,000원 = 89,500천원	- 다이브컴퓨터 등 9종 446점 = 270,490천원 / 집행잔액 없음
		- 건식잠수복 등 3종 22점 42,800,000원 = 42,800천원	- 건식잠수복 등 2종 146점 = 136,876천원 / 집행잔액 없음
		- 구조보트 등 3종 3점 43,000,000원 = 43,000천원	- 선외기(엔진) 등 5종 55점 = 50,746천원 / 집행잔액 없음
		○ **산악구조장비 보강(28종 329점)**	○ **산악구조 장비 20종 969점 = 281,260천원**

		= 84,300천원	
		- 카라비너 등 11종 201점 22,050,000원 = 22,050천원	- 등강기 등 4종 550점 = 154,026천원 / 집행잔액 없음
		- 하반신형 안전벨트 등 17종 128점 62,250,000원 = 62,250천원	- 하반신형안전벨트 등 16종 419점 = 127,234천원 / 집행잔액 없음
		○ 보조장비 보강(공기안전매트 등 4종 81점) 125,500,000원 = 125,500천원	○ 보조장비 공기안전매트 등 4종 25점 = 49,461천원 / 집행잔액 구매 ※구조대 장비구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76,039천원으로 산악구조장비 보강
		○ 보호장비 보강(15종 350점) 383,780,000원 = 383,780천원	○ 보호장비 스쿠버공기통 등 8종 1,611점 = 736,192천원 / 집행잔액 없음 ※구조대 장비구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보호장비 추가 보강(최근 한강 주변, 태풍, 호우 및 신월 배수지사고 등 수난사고 증가 영향)
		○ 중량물구조장비 보강(14종 107점) = 997,800천원	○ 중량물 구조 장비 보강 11종 50점 = 445,606천원 / 집행잔액 구매 ※구조대 장비구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산악구조장비 보강 및 (개인)보호장비 추가 보강(최근 한강 주변, 태풍, 호우 및 신월 배수지사고 등 수난사고 증가 영향)
		- 배터리유압장비세트 등 7종 56점 726,400,000원 = 726,400천원	- 배터리유압장비(콤비툴) 6종 27점 385,493천원 / 집행잔액 구매 ※구조대 장비구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산악 및 보호장비 추가 보강
		- 휴대용 윈치 등 8종 51점 271,400,000원 = 271,400천원	- 휴대용 윈치 등 5종 23점 = 60,113천원 / 집행잔액 구매 ※구조대 장비구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산악 및 보호장비 추가 보강
		○ 탐색구조장비 보강(적외선야간투시경 등 7종 7점) 245,500,000원 = 245,500천원	○ 탐색구조장비 1종 9점 = 68,950천원 / 집행잔액 구매 ※구조대 장비구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수난구조장비 추가 보강
		○ 파괴구조장비 보강(도끼 등 4종 96점) 151,450,000원 = 151,450천원	○ 파괴구조장비 3종 406점 = 27,090천원 / 집행잔액 구매 ※구조대 장비구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수난구조장비 추가 보강
		○ 측정구조장비 보강(7종 50점) = 210,000천원	○ 측정구조장비 1종 1점 = 486,000천원 / 집행잔액 없음 ※구조대 장비구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독성가스 탐색 등 원거리 측정장비 도입 추진
		- 화학작용제 탐지기 4점 36,000,000원*4점 = 144,000천원	- 원거리유해가스 탐지장비 1점 = 486,000천원 / 집행잔액 없음
		- 가스측정기 등 6종 46점 66,000,000원 = 66,000천원	
		○ 절단구조장비 보강(9종 69점) = 181,900천원	○ 절단구조장비 6종 30점 = 31,636천원 / 집행잔액 구매
		- 철선절단기 등 5종 39점 142,200,000원 = 142,200천원	- 철선절단기 등 3종 9점 = 10,720천원 / 집행잔액 구매 ※구조대 장비구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탐색구조장비 보강 추진

		- 체인톱 등 4종 30점 39,700,000원 = 39,700천원 ○ **특수 현장(배수시설 등) 활동 구조장비 보강(수중드론 등 15종 51점) 425,000,000원 = 425,000천원**	- 체인톱 등 3종 21점 = 20,917천원 / 집행잔액 구매 ※구조대 장비구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탐색구조장비 보강 추진 ○ **특수현장(배수시설 등) 활동 구조장비 보강 11종 469점 437,242천원** / 집행잔액 없음		
2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 구급장비 보강 = 2,054,421천원 - **청진기 110천원*3 = 330천원** - **후두경세트 484천원*16 = 7,744천원** - 백밸브마스크(성인용) 165천원*38 = 6,270천원 - 백밸브마스크(소아용) 166천원*46 = 7,590천원 - 백밸브마스크(영아용) 165천원*52 = 8,580천원 - **자동식산소소생기(고정용)1,760천원*18 = 31,680천원** - **자동식산소소생기(휴대용)2,860천원*24 = 68,640천원** - 전동식의료용흡인기 1,760천원*59 = 103,840천원 - 고급형 심장충격기 22,000천원*58 = 1,276,000천원 - **긴척추고정판 484천원*24 = 11,616천원** - 머리고정대 220천원*24 = 5,280천원 - **구출고정장치 275천원*35 = 9,625천원** - **부목 242천원*35**	○ 구급장비 보강 - **청진기 7.7천원*257 = 1,978.9천원** - **후두경세트 253천원*31 = 7,843천원** - 백밸브마스크(성인용) 77천원*40 = 3,080천원 - **자동식산소소생기(고정용) 0** - **자동식산소소생기(휴대용) 0** - 전동식의료용흡인기 1,760천원*58 = 102,080천원 - 고급형 심장충격기 20,680천원*54 = 1,116,720천원 - **긴척추고정판 440천원*41 = 18,040천원** - 머리고정대 165천원*26 = 4,290천원 - **구출고정장치 0** - **부목 0**	* 구급차 증가 - 예산편성당시 150대 → 집행시 163대 * 보유기준 변경 - 구급차량별 1대(150개) → 2대(300개) - 펌블런스별 0대(0개) → 1대(119개) * 구급차 증가 및 분실 및 고장 등 - 예산편성당시 150대 → 집행시 163대 * 보유기준 변경 - 성인, 소아, 영아용 소모품으로 변경(예정) - 성인용만 구매함 * 내용연수 연장 사용 * 구급차 증가 / 내용연수 연장 사용 - 예산편성당시 150대 → 집행시 163대 * 구급차 증가 / 내용연수 연장 사용 - 예산편성당시 150대 → 집행시 163대 * 구급차 증가 및 고장 등 - 예산편성당시 150대 → 집행시 163대 * 구급차 증가 / 내용연수 연장 사용 - 예산편성당시 150대 → 집행시 163대 * 내용연수 연장 사용 * 내용연수 연장 사용

		= 8,470천원	
		- 골반고정밴드 363천원*24 = 8,712천원	- 골반고정밴드 242천원*23 = 5,566천원 * 구급차 증가 / 내용연수 연장 사용 - 예산편성당시 150대 → 집행시 163대
		- **구급장비가방 484천원*175 = 84,700천원**	- **구급장비가방 660천원*27 = 17,820천원** * 내용연수 연장 사용
		- 가변형들것 385천원*150 = 57,750천원	- 가변형들것 319천원*148 = 47,212천원 * 구급차 증가 / 내용연수 연장 사용 - 예산편성당시 150대 → 집행시 163대
		- 혈압계(펌블) 154천원*23 = 3,542천원	- 혈압계(펌블) 198천원*30 = 5,940천원 * 펌블런스 증가 및 고장 등 - 예산편성당시 117대 → 집행시 119대
		- 체온계(펌블) 99천원*26 = 2,574천원	- 체온계(펌블) 75천원*38 = 2,850천원 * 펌블런스 증가 및 고장 등 - 예산편성당시 117대 → 집행시 119대
		- 심장충격기(펌블) 2,420*22 = 53,240천원	- 심장충격기(펌블) 1,980천원*26 = 54,480천원 * 다수사상자 버스(4대) 심장충격기 배치
		- 중증도분류시트 154천원*24 = 3,696천원	- 중증도분류시트 154천원*24 = 3,696천원 * 선택장비로 구매 보류
		- 화생방마스크 99천원*184 = 18,216천원	- 화생방마스크 99천원*184 = 18,216천원 * 선택장비로 구매 보류
		- 약품냉장고 8,750천원*32 = 280,000천원	- 약품냉장고 6,944천원*32 = 222,210천원
			- 구급차량(12대) 증차 7,580천원*12대 구급장비 158종 427점 구매 = 90,960천원 * (집행잔액) 코로나 확산 관련 구급대원 피로도 감소 및 운영 강화로 구급차량 증차로 예산 재배정
			- 구급대원 폭행장비 (웨어러블카메라 474대, 방검조끼 486대) = 285,973천원 * (집행잔액) 사고이월 사업으로 5월중 납품예정

[붙임2]

- 소방재난본부 결산검사 권고사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연번	시 정 권 고 사 항	소관실국
9	성과지표 설정의 실효성 증대 및 운용의 객관성 확보	소방재난본부
14	이월액 확정은 법정 기한을 준수하고 기한 후 수정하는 사례 지양 요구	소방재난본부

9. 성과지표 설정의 실효성 증대 및 운용의 객관성 확보

가. 현황 및 문제점

성과지표 중 130% 초과달성하였거나, 70% 미달 달성한 성과지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중략>

□ 소방재난본부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화재피해주택 지원세대수 (세대)	해당연도 추진실적 확인	목표	31	32
		실적	50	48
		달성률(%)	161%	150%

..... <중략>

130% 초과달성한 성과지표는 전년도 실적을 고려하여 당해 목표치를 재조정하지 않았거나, 부서의 성과를 대표하는 성과지표라고 하기에는 그 달성에 대한 노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지표들임.

70% 미달 달성한 성과지표는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됨.

..... <생략>

나. 시정권고

130% 초과달성한 성과지표는 부서의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설정하거나, 목표치를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조정할 것

을 권고함.

70% 미달 달성한 성과지표는 목표치 달성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특히 예산담당관은 추경을 통하여 예산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조정하지 않아 실적이 과다하게 보이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 시 목표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각 실국 사업담당자에게 안내할 것을 권고함.

상기 지적한 문제 유형별 개선 권고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유형	구분	개선 권고사항
A	성과관리체계의 적합성	① 상위 전략목표 또는 정책사업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책사업을 설정하고 성과지표를 설정할 것. ② 추경을 한 경우 당초 목표를 상향 조정할 것.
B	성과지표의 타당성	① 성과지표 측정방식의 기간별 연속성을 유지할 것. ② 외부요인으로 달성되어서 부서의 업무실적으로 볼 수 없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말 것. ③ 달성이 100% 보장되어서 성과로 볼 수 없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말 것.
C	성과측정방법의 적합성	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것. ② 성과달성을 위한 노력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할 것.
D	성과지표 목표치 적정성	① 특별한 사유가 없이 전년도 실적 대비 목표를 낮게 설정하지 말 것. ② 특별한 사유가 없이 전년도 목표와 동일하거나 낮게 설정하지 말 것.
E	실적치의 정확성	
F	실적치 측정의 타당성	① 유효한 성과 측정이 가능한 측정 산식을 개발할 것. 산식이 부적절한 경우 ② 부서가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실적으로 집계하지 말 것.(예, 부서로부터 교육을 받은 자가 근무기관에 돌아가서 한 전달교육 횟수 등)
G	실적치 환류 적정성	초과달성 및 미달성에 대한 원인분석을 충실하게 할 것.
H	결산검사결과와 연계성	

14. 이월액 확정은 법정 기한을 준수하고 기한 후 수정하는 사례 지양 요구

가. 현황 및 문제점

<별첨>한 내용과 같이 행정안전부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170쪽)에 의하면 이월액 확정요구는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하고, 이월액 확정은 예산부서에서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표 1>과 같이 2020년 명시이월사업 중 이월액 확정기간인 2021년 1월 10일 이후에 수정한 내역은 2건으로 965,709,120원임.

시민건강국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제검사사업의 경우 ‘20년 시의회 명시이월 의결액이 2,499,987,000원임에도 확정액은 860,000,0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자치구 재배정 예산 중 추가 지출이 발생함에 따라 명시이월금액 감조정 요청에 따른 수정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수정사유를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는 확정액보다 적게 ‘21년 1월 27일 수정되었음.

또한, 소방재난본부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추진사업의 경우 시의회 명시이월 의결액이 968,880,000원이었음에도 확정액을 968,880원으로 이월액 입력단위(천원)를 착오 입력하여 수정요청(원단위)함에 따라 ‘21년 1월 14일 수정한 내용임.

〈표 1〉 2020년 확정된 명시이월액의 수정 현황

(단위 : 원)

실본부국	사업명	의회의결	확정액 (21.1.10.)	수정액	증감액	수정일자
계					965,709,120	
시민건강국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제검사	2,499,987,000	860,000,000	857,798,000	△2,202,000	2021.1.27.
소방재난본부	화재저감 소방안전 대책추진	968,880,000	968,880	968,880,000	967,911,120	2021.1.14.

출처: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재구성

..... <중략>

나. 시정권고

사업부서의 명시이월액의 확정요구와 예산부서에서의 이월액확정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의거하여 법정기한을 준수하고, 착오 입력 등으로 인한 수정은 지양할 것을 권고함.

..... <이하 생략>